##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62 발의연월일: 2025. 6. 12.

발 의 자:이해민·신장식·김재원

정춘생 · 김준형 · 백선희

황운하 · 서왕진 · 조인철

박은정 · 차규근 · 김선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SKT 내부망이 해커의 공격을 받아 가입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보안 사고가 발생했음. 이는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침해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주체인 이용자는 이 사실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전달받지 못함. 사고 발생 후 4일이 지나서 회사 홈페이지 공지가 올라왔고, 개별 문자 안내는 5일이 지난 시점부터 이루어졌음. 통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이용자가 사태의 심각성이나 향후 예상되는 위험 및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제대로 인지할 수 없었음.

이처럼 침해사고 자체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 미흡한 후속 조치가 소비자 불안과 사회 혼란을 더욱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출 항목에 대한 통지 내용을 구체화하고, 개별 통지를 의무화하고자 함.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사고 발생 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정보 주체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으 로써,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

#### 법률 제 호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관한 정보"를 "관한 구체적인 정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을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출등 및 계획"으로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 받을 정보주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유출된 정보의 성질 및 경로 등을 고려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 1. 전화
- 2. 문자메시지
- 3. 전자우편
- 4. 서면
- 5. 그 밖에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삭제ㆍ차단 등 확산 방지 조치
- 2.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3.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 4.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이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 5.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5조제2항제17호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및 제34조제5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신고) ①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	
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	
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b>.</b>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3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	관한 구체적인 정보
는 방법 등에 <u>관한 정보</u>	
4. • 5. (생략)	4.•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정보주체
	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

<신 설>

다. 이 경우 통지 받을 정보주체의 범위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유출된 정보의 성질 및 경로등을 고려하여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

- 1. 전화
- 2. 문자메시지
- 3. 전자우편
- 4. 서면
- 5. 그 밖에 정보주체가 쉽게 알수 있는 방법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한 내에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정보주체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한다.
-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삭 제·차단 등 확산 방지 조치
- 2.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 3. 정보주체에 대한 피해구제 <u>방안</u>
- 4.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로 인한 추가 피해 발생 여부와 이

④ 제1항에 따른 유출등의 통지 및 제3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 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16. (생략)
- 17. 제34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u>포함한</u> <u>다)</u>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8. ~ 27. (생략)

③ ~ ⑤ (생 략)

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5.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⑥</u>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출	
<u>등 및 계획</u>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16. (현행과 같음)	
17	
<u>포함한</u>	
 다) 및 제34조제5항	
18. ~ 2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